

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3. 4.(목) 11:2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 (4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(2010-11-053)

○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위치정보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사업정지 처분 및 사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함

- 위반의 횟수와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, 허가취소 등 처분기준을 구체화

위반행위	위반횟수별 처분기준		
	1회	2회	3회 이상
1.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·인가·신고 (법 제13조제1항제1호) - 위치정보사업자 -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	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폐지		
2.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(법 제13조제1항제2호) - 위치정보사업자 -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	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3개월	허가의 취소 사업폐지	- -
3. 관리적·기술적 조치 미이행 (법 제13조제1항제4호) 등	사업정지 2개월	사업정지 4개월	사업정지 6개월
4. 동의를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 (법 제13조제1항제6호) 등	사업정지 3개월	사업정지 6개월	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

- 고의·과실 여부, 위반의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따라 산정한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

※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부과

- 사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함

※ 과징금 부과기준은 [(사업정지 일수) × (관련 매출액의 6,000분의 1)]로 규정

※ 과징금 상한액 : 관련 매출액의 3/100, 사업정지 최대일수 : 6개월(180일)

②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신설

- 최근 3년간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함

위반행위 유형	과태료 상한액 (만원)	위반횟수별 과태료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허가조건 위반(법 제5조제4항) 등	2,000	600	1,200	2,000
각종 신고 위반(법 제10조제1항) 등	1,000	300	600	1,000
통계자료(법 제32조) 미제출자	500	150	300	500

-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

사. 보고사항

1)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

o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음

o 주요 내용

①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

-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(5년 이내 → 7년 이내)한 전파법의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

·개정된 방송법 시행령(‘10. 1. 26 공포·시행)과 같이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② 공공복리용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

-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터널, 도시철도(지하), 건축물의 지하층에 개설하는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

※ 지상파DMB 사업자의 무선국은 전파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음

※ 지하구간에 설치된 위성방송보조국 : 392국, 연간 약 2.3억원 감면

- 유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의 전파사용료를 면제

- ※ '07년~'08년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는 위성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(요금 월 3만원, 분기별 전파사용료 2만원)
- ※ 면제대상 지구국은 현재 총 892국으로 면제금액은 연간 7,100만원임

-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형어선 선박국의 전파사용료를 면제
 - ※ 디지털선택호출장치(DSC = Digital Selective Calling) : 항만 또는 연안에서 선박의 조난, 긴급 상황 발생시 항만관제소 또는 선박간의 각종 호출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치
 - ※ 현재 2MHz 및 27MHz대역을 사용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받는 선박국은 총 4,000여국이며, 면제 규모는 연간 약 4,800만원(3,000원(분기당 선박국 전파사용료)×4×4,000국)

③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 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

- 아마추어무선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격제도를 개선
 - 일반인들도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(전신급)의 “무선통신술”과목을 실기시험에서 필기시험으로 전환하고,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신설
- 외국 아마추어무선국과 교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국의 공중선 전력을 500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조정하고,
 - 이에 따라 아마추어 무선기사가 취급할 수 있는 무선국의 규모를 ‘1급은 500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’로, ‘2급은 100와트 이하에서 200와트 이하’로 상향 조정
 - ※ 국가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('09. 6월)

④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

- 무선국 운용제한·운용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해당 행정처분 기간과 비례되도록 정비
 - ※ 법제처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합리화 방안('09. 3. 20)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과 과징금 금액이 비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개선

< 과징금 정비 기준 >

운용정지·제한 기간	전기통신사업용 무선국 또는 방송국		기타의 무선국	
	운용정지	운용제한	운용정지	운용제한
1개월	500만원	250만원	200만원	100만원
2개월	1,000만원	500만원	400만원	200만원
3개월	1,500만원	750만원	600만원	300만원
6개월	3,000만원	1,500만원	1,200만원	600만원

⑤ 기타

- '전과정책임의위원회' 폐지를 위한 전파법 개정('09.3.13)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
-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'가입자 수'에서 '요금연체로 무선국 이용이 정지된 자'를 제외 등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'10. 3. 11(목)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45)